

제56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개 의 : 단기 4289년 10월 26일 상오 10시 30분

2.폐 의 : 단기 4289년 10월 26일 하오 2시 15분

3.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사 회 : 부의장 정 응 표

5.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

결석의원 없음

6.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의사일정

부의안건

- 김경인 의장 불신임에 관한 건

◇부의장 정 응 표

- 김경인 의장의 불신임 안건을 위요하고 연일 연발적으로 의회를 소집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경인의장과는 상호 정부의원 당선에 노력하였던 만큼 금반 김의장의 불신임안이 대두된데 대하여 양심상 가책을 느끼는 바이며 도의적인 책임을 아니 질 수 없는 것으로 본인 역시 부의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하였사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정응표 부의장 사표수리의 건

※ 사회교체

◇의장 김 경 인

- 정응표 부의장은 본인의 불신임안이 제기한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숭고한 견지에서 그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본 건 회의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면 그 수리여부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균 의원

- 정부의장이 사임한다는데 대하여는 그 족적을 살펴볼 때 13만 시민을 위하여 그 직책을 완수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니 본 건 사표의 철회할 것을 동의.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함.

- 재청...5청까지 있었음.

◇강 영 락 의원

- 투표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개의

- 재청...3청이 있었음.

개의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4표 부결

동의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9표 가결

◇의장 김 경 인

- 정응표 부의장의 사표수리문제는 철회할 것을 선언

- 의장불신임안이 상정되는 것이니 부의장과 사회 교체하겠음.

※ 사회교체

◇부의장 정 응 표

- 참 부끄럽기 말할 수 없는 개인적 소신의 백분지일이라도 추찰(推察)하시어 선도하여 주시기 요망한다.

◇김 성 균 의원

- 김경인 의장의 불신임 이유는 전차 회의에서 문안으로 혹은 구두로 누누이 설명한 바 있어 숙지하실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김경인 의장은 남교동 이재민을 위한 개건복구대책에 대한 성실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53회 제6차 회의에서 본회의를 소집하여 놓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규칙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작일은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문안을 제출하였든 바, 이유에 구도설명이라고 되어 있다 하여 각하하였으나 동장선거 건의안은 구두설명이라도 경이안건이니 수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부쳤으며 김상대 의원이 긴급총회로 제안발언 도중에 있는 김창희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킴과 동시 의사봉을 두드려 폐회선언을 한 것 등 불법을 임의로 한 것만으로도 불신임 조선이 충분함으로 불신임할 것을 동의한다.

◇서기 박 찬 대

- 도의 전화내용 설명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작일의 회의 진행위법여부에 대하여는 막연한 감을 주는 것이나 어디까지나 상급의회의 예에 준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다.

- 이유가 생략된 결의안의 접수거부는 회의규칙 제15조에 의한 것이며 동장직선제 규칙 제정 건의안은 경이안건이 되기 때문에 수리하였든 것이다.

(도의회계장 저술 의회제도 해설 해당 구절 낭독)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항에 의한 이유를 갖춘 결의안이라야 될 것이다. 또 긴급동의로 의제 성립여부문제도 배상하씨 저서의 동의안 구절 낭독으로 해명함.

◇김 상 태 의원

- 의장은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칙에 의한 의회의 경호를 위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 김 경 인

- 그러한 사실이 없다.

◇부의장 정 응 표

- 의장(議場) 안에 들어온 경찰관의 퇴장을 명령함.

◇박 두 순 의원

- 회의진행법 제21조3항 단서를 무시하고 금일의 의회소집 통지를 금조(今朝)에 전달하여 왔다. 의장은 정식으로 재차 소집할 용의는 없는가.

◇부의장 정 응 표

-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로서는 부의장이라 함은 의장을 보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유고시는 부의장은 의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장은 상치적이나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를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 이번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작 25일 하오 12시 40분경 의원 6인으로부터 긴급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음으로 서기로 하여금 의장 사택에 5회 이상 결재 수결차 보내보았으나 의장이 부재라 하여 본인이 대결로써 소집하였던 것이다. 또한 2시 반경 서기가 의장을 만났다하나 의장이 결재를 거절하였다 한다.

(배상하씨 저서 의회제도해설 「의회소집」 항 낭독)

◇의장 김 경 인

- 금일의 긴급회의의 실기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속기사를 배치하여주기 요망한다. 그리고 그날은 서기가 왔었으나 그날 3시 30분 소집하게 된 것으로 회의규칙 제6조의거 거절하였다.

◇부의장 정 응 표

- 모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단기 4285년 5월에 제정된 회의규칙 제6조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강 영 락 의원

-헌법 제13조에 명시된 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원내에서의 발언은 책임을 안지며 구애를 안받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법에 명문은 없다할지라도 해설에 명문이 있느니만치 어떠한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의원의 신분문제에 위협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련의 크레믈린 정책이나 북한 김일성 괴뢰집단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 입회하에 의사진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김상태 의원 동의로서 의장이 경찰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도 의장내에 사복경찰관이 있음을 목격한다.

- 의장불신임 문제로 시중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한 불신임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둔다.

- 김성균 의원은 작일의 의사진행에 대한 감정으로써 불신임할만한 조건이 선다고 주장하나 13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약속하고 선거구민들을 기만하여 정치적 복선이 개재된 정략적인 행동을 취하려함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작란을 할려면 5인이 하게 될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정족수의 3분의 2선이 넘는 11명이 결속하여 국회 자유당의 거수기와 같은 행사를 하려는 것인가.

여하한 권력을 배제하여서라도 본인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김 창 희 의원

- 강영낙 의원의 발언에 사찰계 형사가 들어왔다고 하여서 신성한 의장내에서 크레믈린 궁전이나 김일성정권에 비교하며 국회 자유당을 거수기라 모

독된 언사를 농(弄)함은 견딜 수 없는 언사이다. 강 의원의 발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동의 재청...4청

◇강 영 락 의원

- 저의 발언에 쏘련이나 김일성 정권을 배교한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사당이라 함을 말한 것이고 거수기라 하였음은 현금 신문지상이나 사회의 정치적 전술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니 오해없기를 바란다.

◇김 일 섭 의원

- 국회 자유당이 거수기이니 우리 11명이 전부 거수리란 말인가.

◇명 남 철 의원

- 김 의장은 의사 진행에 하등의 불법이 없다고 하나 본회의 시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구애를 안받는다는 말인가.

◇의장 김 경 인

- 명 의원은 본회의 시간에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하나 우리 의회는 정각 10시에 개최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국회의 예를 보드라도 정각까지 성원미달인 경우에는 재석의원에게 유회 혹은 대기의 의사를 타진하여 결정짓는 것을 보았다. 유독 이날은 상수도 기채관계서류를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이 도 경유 중앙에 전달할 형편이 있는 긴급한건이기 때문에 각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교동 화재지구 이재민 1천여명이 울고 있는 시기에 의장의 입장으로 사사로 출타한 것을 조건으로 세우나 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석차 서울까지 가게되었으나 사전에 하 시장과도 약속한 것은 화재로 인한 총피해액 문제 등 대하여 국회조사단에 사전연락할 것을 상의하고 상경하여 김성호 의원을 만나 그 전말을 전보로써 알린 바도 있었고 서울서 조사단 일행을 심방하여 구호대책 및 재건대책 등을 논의한 바도 있었던 것이다. 시장 화재문제에 대한 의장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행정부측에 사전단속에

대한 책임을 못 물으며 행정부측의 사후수습책임은 왜 추궁 못하는 것인가. 구호대책에 있어서도 여러분과도 구수회의를 거듭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부님과도 절충하여 양곡 90여포를 받아 분배한 사실도 있는 것이다.

- 의장 자리를 탐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철을 안밟기 위하여 해명하는 것입니다.

◇김 창 희 의원

- 작년 김상대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한 찬성발언 도중 중지당한 사실이 있어 그 뒤를 이어 발언하겠다.

- 당초 의장선거 당시 우리 자유당인 3인이 정당정치를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면 뚜렷한 정당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는 견지에서 선거 당시 하 시장과 민주당은 치열한 투쟁 끝에 하 시장이 당선됨으로 인하여 의결부장과 집행부장이 그 정당이 다르므로 양자상호협조하여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가져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반대할 것을 우려하는 시중 여론이 비등하여 부득이 금반 불신임을 하게 된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 저반(這般) 본 건이 상정되었을 적에도 김경인 의장의 사임을 촉구하기 위하여 3장을 안하였던 것이다.

- 의장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제사실수가 없는 것같이 말하나 그 불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김 의장과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피차극친한 처지로서 누차 사석에서도 그 사임을 종용한 바도 있는 것이다.

※ 이사회 소집 태만 및 수해시의 태만을 지적한 발언 생략

◇김 상 태 의원

- 개항 60년이래 불상사인 금반 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 화재발생 익일인 9월 16일 시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맡게 되었다.

조산반을 담당한 의원 중 다른 의원은 무엇을 하였으며, 구호부를 담당한 문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 마침 본 의원의 주택이 시장 부근에 있는지라 새벽 조조부터 이재민이 찾아와서 아우성 치는 바람에 전심전력을 경주하여 임무에 당하여 놓으면 타의원이 생색을 쓰는 것이었다.

- 김 의장도 사력을 다하여 활약하였던 것인데 직무태만이란 언어도단이며 저반 의회에서도 김남진 의원의 동의로 이르면 합병안을 제안하였으나, 가표 미달로 유회하였다. 이러한 황포한 불신임 결의를 절대 반대한다.

◇박 두 순 의원

- 김 의장의 불신임 조건으로 직무태만 의사진행줄렬 등을 내세워 옥신각신하는 것이나, 그 이유가 거리가 멀다.

- 설사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55회 제2차 회의시에는 폐회선언이 끝난 후에도 의사당에 남아서 옥신각신하였다 하니 유감된 일이며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면 사세청측에서 남교동지구 세금 조정차 출장 나온 기회를 이용하여 감세나 면세 교섭을 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 남 진 의원

- 김경인 의장의 불신임 하계된 동기에 대하여는 김창희 의원이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다.

그러나 짝을려고 하는 황새와 안찍힐려고 하는 황새와도 같이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며 이 씨름의 결정은 오전중이나 오후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이 1일 늦으면 그만치 우리 목포시의 발전이 지연되는 것이니 일시 바빠 휴전을 봐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론종결 할 것을 동의한다.

- 재청...5칭까지 있었음.

◇의장 김 경 인

- 의장자리를 탐내서가 아니라 느낀 바 해명하려한다.

- 김경인 의장은 집행부와 반대당이니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발언이 있

었으나 그러한 일은 없다. 미숙한 사람으로서는 아량도 배풀어 보았으며 김창희 의원이 3청을 안한 이유로 누차 경종을 울렸다하나 오늘 아침에 모의원으로부터 처음 들은 일은 있다.

- 사전에 이러한 말이 있었든들 이러한 입장에는 안서게 되었을 것이며 의장이라함은 내부 외부의 책임을 통통 털어 본인에게 지울려 하니 실로 통분할 일이다.

(김창희 의원의 발언중지문제 구호대책이사진 소집불능문제, 재건축위원회 구성경위 등 해명이 있었음.)

(상세 초안 참조)

- 토론종결동의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9표 가결

- 강영낙 의원 불신임결의에 대한 정족수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10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게 되는 것이니만치 지압의회 의장도 별도 명문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용하여야 쓸 것으로 본다.

◇부의장 정 응 표

- 그것은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의 경우를 말한 것이며 이에 적용을 안 받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이면 성립되는 것이다.

◇부의장 정 응 표

- 표결방법을 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 성 균 의원

- 기립으로써 표결할 것을 동의

- 재청...3청이 있었음.

◇강 영 락 의원

- 조금 더 고상한 표결방법도 있을 것으로 본다.

※ 김영인, 박두순, 조양순, 김상태, 강영낙 의원 퇴장. (하오 2시 12분)

◇김 일 섭 의원

- 거수로써 표결할 것을 개의

- 재청...3청이 있어 개의표결 결과, 재석11명중 가 7표 가결

- 김경인 의장 불신임표결 결과 재석 11명중 만장일치 가결

◇부의장 정 응 표

- 김경인 의장 불신임된 것을 선언

- 폐회 선언하다. (하오2시 15분)

- 끝이어 폐회식이 있었음.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0월 27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